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90

발의연월일: 2025. 3. 13.

발 의 자:김선교·박충권·박수민

최수진 • 구자근 • 안상훈

김성원 · 김상훈 · 최보윤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가 입을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지역 또는 인구 특성,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의 심각성과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됨.

또한 국내외적으로 기후불평등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더욱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입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취약계층의 범위나 종류도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련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13호 중 "취약계층"을 "산업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한다.

12의2.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가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기상이변· 자연재해 등 기후영향에 취약한 계층·지역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 기 위한 에너지·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산업과 그 종사자 등 기후위기의 영향에 취약한 산 업·계층·지역을 말한다.

12의3.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에 따른 부정적 기후영향에 취약한 계층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취약계 층

나. 옥외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 층

다. 상습수해지역이나 노후화주택과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또는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파급효과 및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노력한다.

제10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제고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지역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제고에 관한 사항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제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연재해 노출 및 피해와 적응 역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주기,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의3(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하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제공외에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제공을 병행하는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추진과 기후위기 취약계층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정부는 이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0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기본계획이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1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시·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③ 시·군·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도계획이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계획의 변경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시·군·구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الد احد	الم احد الد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u> 2의2. "취약계층"이란 기후위
	기가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기
	<u>상이변·자연재해 등 기후영</u>
	향에 취약한 계층ㆍ지역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
	너지 •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산업과 그 종사자
	등 기후위기의 영향에 취약한
	산업·계층·지역을 말한다.
<u><신 설></u>	<u>12의3. "기후위기 취약계층"이</u>
	란 기후위기에 따른 부정적
	기후영향에 취약한 계층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장애
	인 등 취약계층
	나. 옥외근로자, 기초생활수
	급자, 노숙자 등 사회・경
	<u> </u>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14. ~ 17. (생략)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 저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적 취약계층
다. 상습수해지역이나 노후화
주택과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또는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13
산업전환에
1' 🖂 1' 1'
<u> 따른 취약계층</u>
<u>따른 취약계층</u>
<u>따른 취약계층</u> 14. ~ 17. (현행과 같음)
<u>따른 취약계층</u> 14. ~ 17. (현행과 같음)
<u>따른 취약계층</u>
<u>따른 취약계층</u> 14. ~ 17. (현행과 같음)
다른 취약계층
따른 취약계층 14. ~ 17. (현행과 같음) [3조(기본원칙)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따른 취약계층
따른 취약계층 14. ~ 17. (현행과 같음) [3조(기본원칙)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4. ~ 8. (생략)

-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
 -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신 설>
 - 6. ~ 11. (생략)
 - ③ ~ ⑥ (생 략)
-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 ① (생 략)
 - ② 시 · 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3. (생 략)

<u><신</u> 설>

4. ~ 9. (생략)

③ ~ ⑦ (생 략)

<신 설>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

4. ~ 8. (현행과 같음)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 행과 같음)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 후위기 적응 역량 제고에 관 한 사항
- 6. ~ 11. (현행과 같음)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①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지역별 기후위기 취약계 층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제 고에 관한 사항
- 4. ~ 9. (현행과 같음)
- ③ ~ ⑦ (현행과 같음)
- 제43조의2(기후위기 취약계층 실 태조사) ①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제고에 필

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연재해 노출 및 피해와 적응역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 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범위, 시기·주기,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의 기후위기 및 자연재해로 인 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위 기 적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신 설>

대책(이하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추진하 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기후 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 적 응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제공 외에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제공을 병행하는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별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추진과 기후위기 취약계층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